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9. 5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8. 28.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 8. 28.
- 다. 상정일자 : 제73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0. 9. 5)
상정, 심사,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강 수 경 의약과장)

가. 개정이유

2000.7.1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65세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하여 보건소 처방전에 의한 원외 약국에서 조제시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외 약국 조제 투약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항)
- 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보건소장이 지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이상 노인환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보건소장이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2000.7.1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서울시 각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시책 중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비의 지원을 받아 원외 조제투약비를 보조코자 하는 것임.
- 본사업은 자치구 노인복지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소 이용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99년도 성병관리 지침 수정·보완사항 통보"(방역 65343-157) 지침에 건강진단수첩제가 폐지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하도록 시달된 바 있음.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수수료액표"의 구분란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동표 제1호 종목란 "사" 및 동호 비교란 중 "건강진단수첩"을 각각 "건강진단결과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건강관리수첩 발급시 남자의 경우 어느분야를 검사하는지?
- 답변요지(전옥녀 건강관리팀장) : 남자의 경우 소변검사와 혈청검사를 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보건소에서 진료시 진료수가가 무조건 500원인지?
- 답변요지(윤길자 보건소장) : 65세이상 노인과 의료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나머지 대상은 무조건 500원임.

5. 토론판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9. 5. 이매숙 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2조제2항 제1호, 제2조제2항 관련 별표의 구분란 제1호, 동표 제1호 종목란 사호 및 동호 비고란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다. 수정 주요골자

- 제2조제2항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수수료액표"의 구분란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은 "건강진단결과서"로 함.
- 동표 제1호 종목란 "사"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동호 비고란 중 "건강진단수첩과"는 "건강진단결과서와"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0. 9. 5

제 안 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제2조제2항제1호, 제2조제2항 관련 별표의 구분란 제1호, 동표 제1호 종목란 사호 및 동호 비고란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제2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수수료액표"의 구분란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은 "건강진단결과서"로 함.
- 동표 제1호 종목란 "사"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동호 비고란 중 "건강진단수첩과"는 "건강진단결과서와"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한다.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수수료액표"의 구분란 제1호 중 "건강진단
수첩"은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동표 제1호 종목란 "사"호 중 "건
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며, 동호 비고란 중 "건강진단
수첩과"는 "건강진단결과서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진단수표 및 진단서, 제증명 2. - 6. (생략) <p>③ (생략)</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u>수수료액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종목</th> <th colspan="2">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건강진단수표 및 진단서, 제증명</td> <td>가.-바. (생략)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표 또는 진단서 아.-파. (생략)</td> <td>(생략)</td> <td>건강진단수표고 건강 진단서를 동시에 발급 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 한 수수료액으로 한다.</td> </tr> <tr> <td>2.-6.(생략)</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종목	비고		1. 건강진단수표 및 진단서, 제증명	가.-바. (생략)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표 또는 진단서 아.-파. (생략)	(생략)	건강진단수표고 건강 진단서를 동시에 발급 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 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2.-6.(생략)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p> <p>① (원안과 같음)</p> <p>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2. - 6. (원안과 같음) <p>③ (원안과 같음)</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u>수수료액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종목</th> <th colspan="2">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td> <td>가.-바. (원안과 같음)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 아.-파. (원안과 같음)</td> <td>(원 안 과 같 음)</td> <td>(원 안 과 같 음) 건강진단결과서와 _____</td> </tr> <tr> <td>2.-6.(원안 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종목	비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바. (원안과 같음)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 아.-파. (원안과 같음)	(원 안 과 같 음)	(원 안 과 같 음) 건강진단결과서와 _____	2.-6.(원안 과 같음)			
구분	종목	비고																							
1. 건강진단수표 및 진단서, 제증명	가.-바. (생략)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표 또는 진단서 아.-파. (생략)	(생략)	건강진단수표고 건강 진단서를 동시에 발급 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 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2.-6.(생략)																									
구분	종목	비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바. (원안과 같음)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 아.-파. (원안과 같음)	(원 안 과 같 음)	(원 안 과 같 음) 건강진단결과서와 _____																						
2.-6.(원안 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0.7.1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하여 보건소처방전에 의한 원외약국에서 조제시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외약국 조제 투약비의 일부를 보조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항)
- 나. 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보건소장이 지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3항)

3. 개정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2000·1·12 법률 제6124호) 제39조 및 제42조
- (2) 노인복지법(2000·1·12 법률 제6124호) 제26조
- (3) 노인복지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37호) 제19조
- (4)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소진료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지침(2000·6·21 서울시 의약65400-2584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17,227,500원 확보(2000년 하반기 서울시 지원금)
2001년이후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시예산에 편성, 자치구별로 지원

6.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2000.7.31 ~ 8.20)결과, 토기할 사항 없음
- 나. 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2000.8.25) 심의완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제2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65세 이상인 자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면제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장이 지출한다.

제2조제2항관련, 별표 "수수료액표" 구분 제3호 유료접종 금액란의 나호중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구분 제6호 구강보 전진료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u></p> <p>②~③(생략)</p>	<p><u>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u></p> <p>②~③(현행과 같음)</p>
<p><u>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생략)</u></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6.(생략)</p> <p>7.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p> <p>8.(생략)</p>	<p><u>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u></p> <p>②-----</p> <p>1.~6.(현행과 같음)</p> <p>7. 65세 이상인 자</p> <p>8.(현행과 같음)</p>
<p>(설명)</p>	<p><u>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면제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첨구를 받아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장이 지출한다.</u></p>

n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 수 료 액 표

구 分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 유료 접종	가. 일본뇌염	1ml	가. (생략) 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병, 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공급자격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중 생물학적 제제 주사료를 가산함 금액으로 하고 일본뇌염접종은 최근 육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의 산정은 “가” 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흉역·불거리·풍진	혼합액 신1회분		
	다. 간염	1ml		
	라. 장티푸스	경구용 1인분		
	마. 유형성 출혈열	도스		
	바. 렙토스 피라증	1ml		
	사. 유형성 독감	0.5ml		
			다. (생략)	
4.~5.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구강보건진료비	치면 열구 전색 진료비	1회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이 암금여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중 보건소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	

(별표)

수 수 료 액 표

구 分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	가.	---	가. (생략) 나. -----	
	---	---	-----	
	---	---	-----	
	---	---	-----	
	나.	---	-----	
	---	---	-----	
	---	---	-----	
	---	---	-----	
	다.	---	-----	
	---	---	-----	
4.~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	